|  |  |  |
| --- | --- | --- |
|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령 제17호  에너지절약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 근거하여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은 7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와 8월 11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국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마카이(馬凱)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장 이창쟝(李長江)  2004년 8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에너지절약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의 에너지효율마크란 에너지소모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등의 성능지표를 표시하는 한가지 정보마크로서 제품의 부합성 표지 범주에 속한다.  **제3조** 중국은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크고 사용 면이 넓은 에너지소모제품에 대해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 제도를 실행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마크제도 실행 제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제정 및 반포하여 적용할 제품의 통일적인 에너지효율기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마크 양식과 규격을 확정한다.  **제4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반드시 제품 혹은 제품의 최소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를 붙여야 하며 제품설명서에도 이 부분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5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사용한 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전개혁위라 함)가 수권한 기구(이하 수임기구라 함)에 에너지효율마크 및 관련 정보를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6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에너지효율마크제도의 수립과 실시를 책임진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 에너지절약관리부문(이하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이라 함), 지방품질기술감독부문과 각 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질검부문이라 함)은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효율마크의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2장 에너지효율마크의 실시**  **제7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과 국가인감위는 <목록>과 실시규칙을 제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인감위에서 제품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 양식과 규격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8조** 에너지효율마크의 명칭은 <중국 에너지효율마크>(영문으로는 China Energy Label)이며, 마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생산자명칭 혹은 약칭  (2) 제품규격과 사이즈  (3) 에너지효율 등급  (4) 에너지 소모량  (5) 집행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번호.  **제9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자체검측능력을 이용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구에서 인가한 검측기구에 위탁하여 검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에너지효율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정한다.  자체 검측능력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 등급을 확정하는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검측자원은 반드시 에너지효율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검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당해 실험실이 인가기구의 국가인가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반드시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에너지효율마크양식, 규격 및 표기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마크를 인쇄 및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 설명서 및 광고홍보 중에 사용하는 에너지효율마크는 비율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으나 면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사용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수임기구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메일 등이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등록증명 사본, 수입상과 경외 생산자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서 부본  (2) 제품에너지효율 검측보고  (3) 에너지효율마크 샘플  (4) 최초 사용일자 등 기타 관련 서류  (5) 대리인이 등록비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대리위탁문서 등이 필요. 상기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  외국어 자료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중문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에너지효율마크의 내용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비치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3조** 제품의 에너지효율지표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법에 인정되거나 혹은 인가기구가 인가한 제3자 검측기구에 위탁하여 재검측을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검측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수임기구는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공고해야 하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효율마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마크의 등록 비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장 감독관리**  **제15조** 생산자와 수입상은 그가 사용하는 에너지효율마크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판매자는 에너지효율마크를 표기해야 하나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인가기구에서 인가한 검측기구가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검측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측정을 진행함으로써 검측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검사 제품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에너지효율마크를 이용하여 해당 에너지소모제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국가질감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는 각 자의 직책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제품을 검사하고 에너지효율마크 정보를 확인한다.  **제20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혹은 수입상은 반드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은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2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이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혹은 지방질검부문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다.  **제24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혹은 지방질검부문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에너지효율마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지방질감부문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에너지효율마크 등록 비치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중인 에너지효율마크의 양식과 규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25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 도용, 은닉하거나 혹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이용하여 허위적인 홍보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지방질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7号    为加强节能管理，推动节能技术进步，提高能源效率，依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特制定《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该办法经7月13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办公会议和8月11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以发布，自2005年3月1日起施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 马凯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长 李长江  二○○四年八月十三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节能管理，推动节能技术进步，提高能源效率，依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能源效率标识，是指表示用能产品能源效率等级等性能指标的一种信息标识，属于产品符合性标志的范畴。  **第三条** 国家对节能潜力大、使用面广的用能产品实行统一的能源效率标识制度。国家制定并公布《中华人民共和国实行能源效率标识的产品目录》（以下简称《目录》），确定统一适用的产品能效标准、实施规则、能源效率标识样式和规格。  **第四条** 凡列入《目录》的产品，应当在产品或者产品最小包装的明显部位标注统一的能源效率标识，并在产品说明书中说明。  **第五条** 列入《目录》的产品的生产者或进口商应当在使用能源效率标识后，向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以下简称国家发展改革委）授权的机构（以下简称授权机构）备案能源效率标识及相关信息。  **第六条** 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国家认监委）负责能源效率标识制度的建立并组织实施。  地方各级人民政府节能管理部门（以下简称地方节能管理部门）、地方质量技术监督部门和各级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地方质检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所辖区域内能源效率标识的使用实施监督检查。  **第二章 能源效率标识的实施**  **第七条** 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和国家认监委制定《目录》和实施规则。国家发展改革委和国家认监委制定和公布适用产品的统一的能源效率标识样式和规格。  **第八条** 能源效率标识的名称为“中国能效标识”（英文名称为China Energy Label），能源效率标识应当包括以下基本内容:  （一）生产者名称或者简称；  （二）产品规格型号；  （三）能源效率等级；  （四）能源消耗量；  （五）执行的能源效率国家标准编号。  **第九条** 列入《目录》的产品的生产者或进口商，可以利用自身的检测能力，也可以委托国家确定的认可机构认可的检测机构进行检测，并依据能源效率国家标准，确定产品能源效率等级。  利用自身检测能力确定能源效率等级的生产者或进口商，其检测资源应当具备按照能源效率国家标准进行检测的基本能力，国家鼓励其实验室取得认可机构的国家认可。  **第十条** 生产者或进口商应当根据国家统一规定的能源效率标识样式、规格以及标注规定，印制和使用能源效率标识。  在产品包装物、说明书以及广告宣传中使用的能源效率标识，可按比例放大或者缩小，并清晰可辨。  **第十一条** 生产者或进口商应当自使用能源效率标识之日起30日内，向授权机构备案，可以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邮件等方式提交以下材料:  （一）生产者营业执照或者登记注册证明复印件;进口商与境外生产者订立的相关合同副本；  （二）产品能源效率检测报告；  （三）能源效率标识样本；  （四）初始使用日期等其他有关材料；  （五）由代理人提交备案材料时，应有生产者或进口商的委托代理文件等。上述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  外文材料应当附有中文译本，并以中文文本为准。  **第十二条** 能源效率标识内容发生变化，应当重新备案。  **第十三条** 对产品的能源效率指标发生争议时，企业应当委托经依法认定或者认可机构认可的第三方检测机构重新进行检测，并以其检测结果为准。  **第十四条** 授权机构应当定期公告备案信息，并对生产者和进口商使用的能源效率标识进行核验。  能源效率标识备案不收取费用。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五条** 生产者和进口商应当对其使用的能源效率标识信息准确性负责，不得伪造或冒用能源效率标识。  **第十六条** 销售者不得销售应当标注但未标注能源效率标识的产品，不得伪造或冒用能源效率标识。  **第十七条** 认可机构认可的检测机构接受生产者或进口商的委托进行检测，应当客观、公正，保证检测结果的准确，承担相应的法律责任，并保守受检产品的商业秘密。  **第十八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能源效率标识对其用能产品进行虚假宣传，误导消费者。  **第十九条** 国家质检总局和国家发展改革委依据各自职责，对列入《目录》的产品进行检查，核实能源效率标识信息。  **第二十条** 列入《目录》的产品的生产者、销售者和进口商应当接受监督检查。  **第二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办法的行为，可以向地方节能管理部门、地方质检部门举报。地方节能管理部门、地方质检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四章 罚 则**  **第二十二条** 地方节能管理部门、地方质检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的有关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对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进行处罚。  **第二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生产者或进口商应当标注统一的能源效率标识而未标注的，由地方节能管理部门或者地方质检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予以通报。  **第二十四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地方节能管理部门或者地方质检部门责令限期改正和停止使用能源效率标识;情节严重的，由地方质检部门处1万元以下罚款:  （一）未办理能源效率标识备案的，或者应当办理变更手续而未办理的；  （二）使用的能源效率标识的样式和规格不符合规定要求的。  **第二十五条** 伪造、冒用、隐匿能源效率标识以及利用能源效率标识做虚假宣传、误导消费者的，由地方质检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和《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以及其他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六条** 本办法由国家发展改革委和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二十七条** 本办法自2005年3月1日起施行。 |